

## 국제업무전문인력 선발공고

(사)대한럭비협회에서 국제업무를 담당할 전문인력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. 열정 가득한 분들의 많은 지원을 기대합니다.

### 1. 모집 분야 및 인원

구분	근무단체	인원	담당직무	계약기간(비고)
계약직	대한럭비협회	1명	- 해당 종목단체 국제업무 - 국제연맹과의 교류업무 - 기타 행정업무 등	o 임용일 ~ 1년

※ 매년 연말 자체 업무평가를 통해 차기년도 계약 연장 검토

※ 2년 이상 근무자 대상, 자체 근무평가를 통해 정규직 전환 검토

### 2. 근무형태 및 조건

가. 근무지: 대한럭비협회(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올림픽회관  
신관 332호)

나. 근무조건: 월 급여 3,083,600원(세전, 4대 보험 가입)

### 3. 자격요건

가. 기본사항(필수)

- 임용일로부터 즉시 전일 근무가 가능한 자
-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
- 대한럭비협회 인사규정 제17조(결격사유)에 해당되지 않는 자
-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
-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(단, 채용일 전까지 전역예정자는 응시 가능)

## 나. 지원자격(필수)

<b>학력</b>	·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
<b>공인영어성적 보유자</b>	· 토익 기준 775점 이상(동등 성적 인정) (TOEIC 775점 / OPIC & TOEIC Speaking IH 등급 이상 / TOEFL(iBT) 88점 / TEPS 615점(뉴텝스 297점) / IELTS 7) · 선발 공고 시점으로부터 <u>최근 2년 이내</u> 취득한 성적에 한함

## 다. 우대사항(관련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함)

- 선수 경력, 체육 전공자, 관련 업무 경험자, 국제 스포츠 행사 경험자 : 5점 만점
- ※ 선수경력: 종목 무관, 국가대표 선수 경력자
- ※ 국제스포츠 행사 2회 이상 경험자: 아시아선수권대회, 세계선수권대회, 아시안게임, 올림픽 행사의 통역 및 운영지원 활동으로 행사별 최소 3일 이상 근무경력만 인정

경 력	가산점
올림픽, 세계선수권대회 메달리스트	5점
아시안게임 등 종합경기대회 입상자	4점
국가대표 선수 경력자	3점
체육 전공자	2점
국제 스포츠 행사 경험자	1점

- 회원종목단체 근무 경험자: 2년이상(2점), 1년 이상(1점)
- ※ 1개 단체에서 연속으로 근무한 경력에 한함. 종목단체별 근무 기간을 합산하지 않음

### < 경력 관련 유의사항 >

- 경력(재직)증명서에는 담당업무 및 근무기간이 표시되어야 하며, 본인의 지원 분야에 대한 업무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, 회사 직인(또는 인감)이 포함된 업무경력확인서를 경력증명서와 함께 제출(확인서만 제출 시 불인정)
- 수기로 기재된 '경력(재직)증명서'는 불인정
- '경력(재직)증명서'외 서류(4대 보험 자격득실확인서, 국민연금납부확인서 등)는 불인정
- 지원서에는 경력(재직)증명서 상 근무기간과 동일하게 기간을 기재하여야 함.
- 재직 중인 경우, 근무기간은 공고마감일(2025.8.19.)을 기준으로 기재

- 기타 외국어 회화 가능자(프랑스어 DELF B1 이상, 일본어 JLPT N2 이상)(2점)
- 운전면허증 소지(1점)

#### 4. 전형절차

가. 원서접수: 2025. 8. 11.(월) ~ 8. 25.(월), 17:00까지

나.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: 2025. 8. 26.(화) 이후

다. 면접전형: 2025. 8. 28. (목) 예정

라. 최종합격자 발표: 2025. 8. 29.(금) 이후

※ 협회 일정에 따라 면접 전형 및 최종합격자 발표 일정이 변경 될 수 있음

※ 서류전형: 자격요건 및 구비서류 심사, 자기소개서 평가

※ 면접은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하며 영어면접 포함

※ 서류 및 면접 전형 동점자 발생시 처리방안: 각 평가 항목 고득점자순(영어→체육분야 지식 및 경력→지원동기→입사 후 포부)으로 결정

※ 적임자가 없을 시 재선발 가능

※ 채용 후보자 기간 및 운영 방안: 차순위 1~2위를 예비 합격자로 하고, 최종 합격자 중 중도퇴사 등으로 결원 발생 시 순위대로 임용 최종 합격 발표 일로부터 1개월간

#### 5. 제출서류 및 지원방법

##### 가. 제출서류

<p>서류전형 지원자 필수 (입사지원서 제출시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입사지원서(홈페이지에서 작성/글자수 800자 미만)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기본인적사항 및 자기소개서</li> </ul> </li> <li>· 공인영어성적증명서(선발공고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 유효성적)</li> <li>· 우대사항 관련 증명서(해당자)</li> <li>· 개인정보활용동의서(별도 첨부양식)</li> </ul> <p>※ <u>미제출 시, 원서접수 불가 / zip 파일로 압축하여 제출</u></p>
<p>서류전형 합격자 (면접 시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공인영어성적증명서</li> <li>· 전체 학위 졸업(예정)증명서</li> <li>· 우대사항 관련 증명서 등</li> </ul> <p>※ <u>미제출 시, 면접 불가</u>          ※ <u>원본 제출 원칙</u>(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원본대조 후 사본 제출 가능)</p>

나. 지원방법: 대한럭비협회 이메일 접수([hr@rugby.or.kr](mailto:hr@rugby.or.kr))

- 제출 시 이메일 제목: 국제업무 전문인력 지원(성명)

- 문의: 대한럭비협회 인사담당자 02-6325-4248

## 6. 유의사항

-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,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지원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이후부터 180일 이내에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(온라인으로 제출한 서류 제외) 이에, 반환을 원하는 지원자는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이메일([hr@rugby.or.kr](mailto:hr@rugby.or.kr))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 청구기간이 지나거나 파기를 요청하는 경우 제출서류는 파기되므로 반환이 불가합니다.
-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착오,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.
-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입사 지원서를 작성하기 바라며, 최종 입사지원서 제출 후에는 기재 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.
-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전형과 관련하여 규정을 위반한 자는 그 효력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, 합격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.
-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입사지원 마감 시간이 임박하면 다수인 동시 제출 등에 의한 시스템 장애로 제출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접수하시기 바랍니다.
- 채용 이후 결격사유 발견 시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
## 7. 임용 결격사유

### 대한력비협회 인사규정 제17조(결격사유)

제17조(결격사유)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- 6의 2. 협회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6의 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
  - 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  - 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 범죄
- 6의 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
 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 대상 성범죄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### 국가공무원법 제33조(결격사유)

제33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

- 아니한 자
- 6의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 - 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  - 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하여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가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
  - 나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
  - 다.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
  - 라.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
  - 마.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2025. 08. 11.